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조치 강화 규정 신설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24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체육 행사 안전관리 조치 강화 규정 신설	3
2.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 규정 신설	8
3.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2
4.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12. 3.
3. 회 부 일: 2025.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안전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의 수립·교육·점검 등의 안전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 및 관리, 감독 및 제재 권한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2024년 8월 하남 야간 마라톤 행사 중 발생한 온열질환 사고를 비롯하여, 지역축제·공연과 같은 유사 활동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검토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등 체육행사 현장의 구조적 안전관리 미비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제13조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체육 행사 안전관리 조치 강화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 개최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①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 ② 관할 경찰·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역할분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u>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후단 신설>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 ----- ----- ----- <u>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안전교육·점검을-----</u> ----- . <u>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u>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²⁾에서, 현행법이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만을 규정하고, 체육 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미흡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체육 행사 개최 건수 및 사고 발생률 추이(2020년 ~ 2025년)]³⁾

2020년			2021년			2022년		
가입 건수	사고 건수	발생율	가입 건수	사고 건수	발생율	가입 건수	사고 건수	발생율
2,057	800	38.9%	3,838	1,024	26.7%	8,935	2,539	28.4%
2023년			2024년			2025년(~10월 기준)		
가입 건수	사고 건수	발생율	가입 건수	사고 건수	발생율	가입 건수	사고 건수	발생율
13,837	4,068	29.4%	15,450	4,321	28.0%	14,327	3,946	27.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은 ① 체육 행사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행사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참여하는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별 역할 분담

2) [참고자료 1] 주요 체육 행사 안전사고 현황 및 주요 사고사례

3) 현재 체육 행사 개최 시 신고 의무가 없어 전체 체육 행사 개최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최자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스포츠안전재단의 공제보험(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 정보를 통해 부분적으로 개최 규모와 사고 현황을 파악 중임

을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방안을 규율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유사한 조문 구조를 띠고 있음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관리조치 관련 조문]

조문내용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u>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u>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u>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u>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체육 행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참여를 통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전반을 강화할 수 있는

4) [참고자료 2] 안전관리조치 관련 유사 입법례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서울특별시는, 현 행정력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관내 모든 체육 행사의 개별 안전관리계획을 검토·관리하기 어려우며, 최근 도심 마라톤 등 도로사용 체육행사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상 교통 통제 주체인 경찰관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반면,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서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찰관서 등이 해당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① 상호 협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② 경찰은 교통관리에 한하여 최소 지원하며, ③ 체육 행사에 동원된 경찰관에 대한 격려금⁵⁾ 등 보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선거에 동원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사례금 8만원을 지급 중임

2.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사업·구성·예산지원 및 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및 제22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① <u>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1. <u>체육 행사의 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u> 2. <u>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계획수립의 자문 및 지원</u> 3. <u>체육 행사 안전관리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원</u> 4. <u>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u> 5. <u>체육 행사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구제 및 구호 사업 등의 운영·지원</u>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

6.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7. 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재단의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과 임기 등 안전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안전재단이 아닌 자는 안전재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안전재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안전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u>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u>	10. ----- ----- ----- ----- ----- <u>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 안전재단의</u> -----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재 스포츠안전재단⁶⁾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0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스포츠 안전교육, 안전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등 체육 행사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체육 행사의 개최자의 안전관리 조치가 의무화됨('23.9.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체육 행사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안전재단을 특수법인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경비 지원,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 등을 통해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 있는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실무적 행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6) [참고자료 3] (재)스포츠안전재단 개요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안전재단은 체육 행사 안전관리 법정 이행 체계를 실질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특수법인화를 통해 체육 행사 개최자, 참여자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 이에 반하여 기획예산처는, 스포츠안전재단이 특수법인으로 명시될 경우 상시적 인건비·운영비 등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스포츠안전 분야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외 체육 세부 분야에서도 특수법인 설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 행사 관계자,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5(체육 행사 안전정보 시스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행사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수집·관리하여야 하는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재단,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다) 등 관계기관에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③ 그 밖에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체육 행사 안전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현재 체육 행사 개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체육 행사 개최 및 사고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체육 행사 관련 책임공제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행사 개최 규모와 사고 현황을 파악하는 실정임.

개정안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파악하기 위한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연 1만여 건 이상 개최되는 다양한 체육 행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체육 행사 안전사고 대응 역량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육시설정보관리중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와 통보·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합시스템⁸⁾을 운영 중인데, ① 해당 시스템과 개정안의 안전정보시스템은 시스템 사용자 및 처리 대상 정보가 상당 부분 중첩될 것으로 보이고, ② 단일 시스템 활용 시 체육시설과 체육 행사 간 정보 연계 강화 및 사용자 편의 증진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데, 안전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정보시스템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은 시스템 간 구성과 주요 기능 등이 상이하여 단일 시스템으로의 통합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체육 행사 안전관리 조치의 시행 방법, 이행 여부 및 체육행사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전정보시스템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비교]

구분	체육행사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 중)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2017 ~)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체육 행사 개최자 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주 및 체육시설 이용 국민
주요 기능	○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안전관리 조치사항 검토·관리, 체육행사 통계 관리 등 ○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등록·수정, 안전요원 등 관계자 교육관리, 자체 행사점검 등	○ 체육시설 현황관리(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등록 및 점검현황 관리 등) ○ 체육시설 검색, 공공 및 신고·등록 체육시설 현황정보 제공, 체육시설 안전관련 콘텐츠 제공 등

8) [참고자료 4]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현황

4.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5조(과태료) ① ----- ----- -----.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법률은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무를 미준수하는 개최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

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개최자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는 경우,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지 않아 해당 조항이 형해화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하여, 법문 언상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 「공연법」의 경우, 공연장운영자로 하여금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⁹⁾, 해당 입법례를 참고하여 본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9)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 1] 주요 체육 행사 안전사고 현황 및 주요 사고사례

○ 주요 체육 행사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대회명 \ 사고건수	2022	2023	2024	2025
전국체전	47	74	85	37
전국소년체전	9	18	21	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18	14	18	12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전	6	10	1	22
강원도민체육대회	18	3	3	3
충청남도체육대회	1	6	8	20
전라북도민체육대회	12	6	14	7
울산시민생활 체육대축전	2	3	6	6
세종시민체육대회	4	4	2	3
제주도민체육대회	3	7	16	10
부산시민체육대회	5	4	2	-
계	125	149	176	137

○ 최근 3년 간 체육 행사 주요 사고사례

< 최근 3년 간 체육 행사 주요 사고사례 >

- 충북 마라톤 경기중 통제구간을 난입한 트럭에 치인 선수 뇌사상태 후 사망('25.11.)
- 통영 철인3종 바다수영 테스트 중 이상징후를 보인 일반시민 참가자 사망('25.11.)
- 거제 마라톤 참가한 선수 2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고 나흘만에 1명 사망('25.10.)
- 제주도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의료진 미배치와 병원이송이 늦어 혼수상태('25.9.)
- 정읍시 마라톤대회 중 참가자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25.3.)
- 순천시 읍면동 체육대회 축구경기 예선전 중 심근경색으로 대회참가자 사망('24.11.)
- 전국체전 하프마라톤 경기중 통제구간을 난입한 운전자에 의해 선수 추돌 발생('24.10.)
- 자전거 코스위험으로 대회취소를 권고했음에도 대회를 강행해 사상자 3명 발생('24.10.)
- 하남시 5천여 명 참가한 야간 마라톤대회 중 무더위로 인한 탈진 증세 28명 발생('24.8.)
- 군산새만금 국제철인3종경기 수영코스 경기 중 대회참가자 사망('24.6.)
- 인제한계령 그란폰도 자전거대회 중 마을버스에 치여 대회 참가자 사망('23.8.)
- 울주해양레포츠 대축전 중 해상에서 참가자 분실물을 찾던 안전요원 사망('23.7.)

[참고자료 2] 안전관리조치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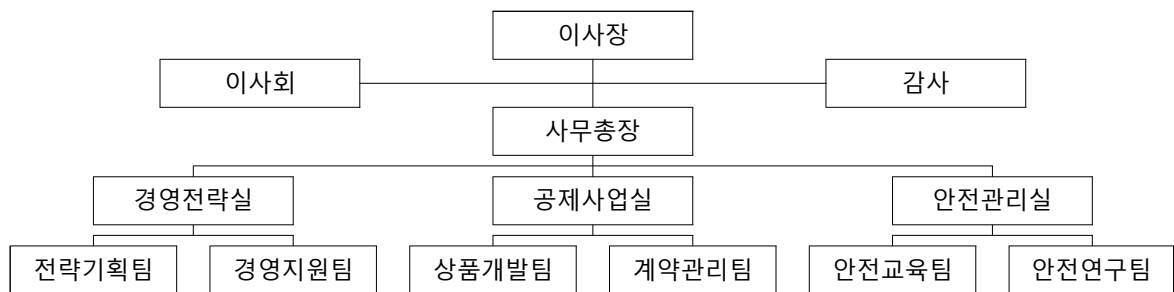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생략) 제11조의2(안전관리비) (생략)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생략)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의5(피난안내) (생략)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생략)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생략)
--	--

[참고자료 3] 스포츠안전재단 개요

□ 설립 및 주요사업

- (설립) 민법 제32조 근거 2010. 7. 15. (재)스포츠안전재단 설립 허가(문체부 2010-29호)
- * (구)국민생활체육회에서 12억6천만원 출연(기본재산 6억원, 보통재산 6억6천만원)
- (주요사업) 스포츠 사고 예방활동 사업(교육, 홍보 등) 및 연구, 조사 활동, 스포츠 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 및 위로·구호 사업

□ 사무국 현황 3실 6팀, 총 35명 (1사무총장, 3실, 6팀)



□ 사업현황('25년 1,665백만원/체육기금) (*연 18,500백만원 공제수입 등 수입 및 지출)

- (안전교육 운영) 체육관계자(선수, 지도자, 심판 등), 생활체육인 대상 안전교육 및 범국민 홍보·캠페인 추진('25년 1,465백만원) (14~25년 10,855회 약 623,000명 교육) * 스포츠안전 홍보(유튜브 30편, 공익캠페인 1회 등)
-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안전한 체육 행사(대회) 운영을 위한 행사 안전점검 컨설팅 및 안전관리 인력 지원('25년 200백만원) (21~25년 1,532회)
- (스포츠안전연구) 사고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안전관리의 표준 마련, 안전매뉴얼 개발/배포
 -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매뉴얼 및 대상별·종목별 매뉴얼 30 여종 제작, 주요판례연구, 스포츠사고실태조사, 통계연보 등 연구
- (자체사업,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1) 인증) ISO(국제표준화기구) 규격 기반의 체육 행사 안전경영시스템 표준 요구 규격 개발(국내 유일, 22~25년 42개 기관 인증 * 체육회, 종목단체, 공공기관, 프로구단 등 인증)
- (자체사업,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등의 9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목 혹은 대상별 공제가입에 대한 인수거부가 없는 등 공익 목적의 서비스 제공(22~25년 보상건 35,715건, 지급액 27,300,193천원)

[참고자료 4]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현황

□ 운영 현황

사 용 자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체육시설 담당자
주요기능	• 공공 및 신고 · 등록 체육시설 현황관리 • 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현황정보 관리 •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등록(상 · 하반기) 및 점검현황 관리 등
운영기간	(개발구축) 2016년 (시스템운영) 2017년~현재
주요정보	전국 104,591개 체육시설정보(공공 35,882, 신고 68,158, 등록 551) 체육시설 정보, 안전점검 등록결과, 보험가입 정보 등
* SFMS 사용자(광역,기초단체) 2,560명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내용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 안전점검 결과
○ 안전점검 실시결과통보 · 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 안전 및 유지 · 관리에 관련되는 사항
○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 보험 가입 현황	○ 휴업 및 폐업 현황
○ 시정명령 현황	○ 행정처분 현황
○ 과태료 부과 현황	○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